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나1227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나12272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8가단2041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이종오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진

변론 종결2022. 1. 18.

판결 선고2022. 2. 15.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8가단20410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2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이 사건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8. 2. 1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2018. 2. 13. 접수 제121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약정금 청구를 철회한 것 외에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이하 이 항목에서는 생략한다) 제3면 제2 내지 4행을 "라. 원고는 D의 I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94,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그중 1, 2, 4차 계약의 각 원금을 포함하여 231,789,000원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3, 5, 6차 원금 중 162,211,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로 고친다.

○ 제4면 제1행의 "갑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 갑 제1 내지 21호증, 갑 제29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4면 제9, 10행의 "또는 원금보장약속에 따른 약정금으로"를 삭제한다.

○ 제4면 제10행의 "1억 6,965만 원"을 "162,211,000원"으로 고친다.

○ 제4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B가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D 등과 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투자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전액 반환하며, 원금 전액 지급을 믿을 수 없다면 F 대표이사 명의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수신하는 등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3차 계약의 각 투자일임계약서의 각 담당자란에 피고 B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8호증, 을 제1 내지 10,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동생인 H의 적극적인 투자권유 및 자신의 이익 계산아래 이 사건 투자를 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3,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나 그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동생 H는 F 중부분부 대전1지점의 지점장이었고, 원고는 F 중부분부 서산지점의 사원으로 등록되었다. 1차 내지 5차 계약 기간 중 H와 피고 B는 부부였다. H는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25500호 사기 피의사건에서 자신의 권유로 어머니와 언니인 원고까지 자신의 상품과 같은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H가 자신의 민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6659)에 제출한 '월별체결계약리스트'에는 1 내지 4차 계약의 모집자로 H가 기재되어 있다. 6차 계약(2017. 5. 4.)의 투자일임계약서의 담당자란에 H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1, 2, 4차 계약의 원금을 회수하였다.

② 통상 금융상품의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바, 위

①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H가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투자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투자 계약은 투자원금의 상환을 보장하고,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상당한 비율에 의한 확정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위 투자 계약이 통상적인 투자 계약에 비하여 이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순영

판사윤이진

판사안영화